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 사능	/ロコ えい	٠.	개정주유소
1. 상호	(50)		4.3.4.4.7

2. 성명(대표자): 김용오 (생년월일: 1924년 12월 19일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350-7번지

(전화번호: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개정주유소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4기 총용량:12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: 누출방지탱크제작,부식방지처리,누출측정기설치

나. 설치내용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1996년 1월 1일

경기도 안성사장이라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참고사항>

일] 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	
유류 저장시설	경유	30,000.00 l	1		지하탱크	
유류 저장시설	경유	30,000.00 ℓ	1		지하탱크	
유류 저장시설	휘발유	30,000.00 ℓ	1		지하탱크	
유류 저장시설	등유	30,000.00 ℓ	1		지하탱크	

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